【붙임7】

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

***필기전형 시(신입직 및 지원직) 편의지원 내용은 이하 참고, 1차전형 이후의 편의제공은 별도 안내 예정**

❍ 편의지원 제공 대상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,
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
❍ 편의지원 신청 절차

원서접수 시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	원서 접수시 편의지원 가능 장애유형, 증빙서류, 편의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
⇩	
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및 증빙 제출	원서접수 시 지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란에 본인이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및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종료일 전까지 원서접수 시스템에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
⇩	
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게시	1차전형 대상자 발표 시, 편의제공 가능 여부 게시

❍ 편의지원 가능 장애유형, 증빙서류, 편의지원내용

유 형	신체적장애 ➢ 외부기관의 장애 ➢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언어·안면장애
증빙서류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 3조1항에 따라 각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※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**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**(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: www.hira.or.kr 에서 지역별 병원 확인 가능)에서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경우 유효
편의지원 내용	편의요청 내용을 선택하되, 복수 선택 가능 ① 저층 우선 배정(고사장 1층 배정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할 경우 배정) ② 개인소유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(증빙서류 상 장애와 관련 기구에 한함) ③ 답변마킹 보조 감독자 지원(고사장 별도 배정)